

지난년도 위반(무허가)건축물 자진철거 시정촉구 공시송달 공고

아래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의 주소지로 위반(무허가)건축물 자진철거 시정촉구 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4. 25.

구로구청장



- 제 목 : 지난년도 위반(무허가)건축물 자진철거 시정촉구
- 처 분 근 거 : 「건축법」 제79조
- 공 고 기 간 : 2024. 4. 25. - 2024. 5. 10. (16일간)
- 공 고 장 소 : 구로구청 게시판, 구로구 홈페이지
- 공 고 내 용

위 치	소유자	소유자 주소	위반면적 (㎡)	구조	용도	비고
구로동 91-33	동*플러*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4길 5*, 80*호(구로동, 코오롱사이언스밸리2차)	54.56㎡	시멘트	주거	폐문부재

6. 유 의 사 항

- 상기 공고기간 내 구로구청 주택과에서 위반(무허가)건축물 자진철거 시정통지서를 수령하시기 바라며, 자진철거·시정 미이행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기 타 사 항

-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주택과 주택정비팀(담당자 : 박소현, ☎ 02-860-23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